

투자자문계약서 신구조문대비표

제정 : 2018년 10월 29일
개정 : 2020년 12월 15일
개정 : 2021년 3월 25일
개정 : 2022년 1월 3일
개정 : 2022년 3월 14일
개정 : 2024년 4월 8일

현행	개정(안)	비고
투자자문 계약서 제 15 조 (계약의 변경 및 해지) ② 1.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(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)이 설정되어 투자자문자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경우 2. 고객이 회사의 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 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, 회사가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	투자자문 계약서 제 15 조 (계약의 변경 및 해지) ② 1.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(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)이 설정되어 투자자문자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경우 1. 고객이 회사의 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 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, 회사가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	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 요청 (약관법 제6조2항제1호 및 제9조제2호)